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2. 11 선고 2024가단239237 판결 [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

담당변호사 서종식

피고 1. A

2. B

변론 종결 2024. 10. 23.

판결 선고 2024. 12. 1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/2 지분에 관하여,

가.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23.2㎡를 철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들은 2015. 3. 30.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) 및 그 대지인 서울 서대문구 C(이하 'C') D 대 121.7㎡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E 등 도로개설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재결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. 11. 26. F로 D 토지 중 30.9㎡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이전하게 하며, 수용개시일은 2022. 1. 14.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(이하 '이 사건 수용재결')을 하였다.

다. 원고는 2022. 1. 6.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년 금제43호, 2022년 금제44호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각 141,823,500원씩을 공탁하였다.

라. 그에 따라 원고는 2022. 1. 17. D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의 G 대 30.9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)에 관하여 2022. 1. 14.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23.2㎡(이하 '이 사건 건물 부분')이 존재한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'토지보상법'이라 한다)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,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고(제45조 제1항),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(제43조).

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2022. 1. 14.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,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,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들은, 이 사건 수용재결 후 남겨진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국민주택규모인 85㎡ 보다 부족한 면적이라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하고, 이 사건 수용재결로 인하여 D 토지 및 지상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되지 않고 남은 부동산의 가치가 낮아져 원고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요청을 거절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,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,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,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(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다22083, 22090 판결 등 참조).

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,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강지현

별지

1)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.45㎡'의 인도, 별지 부동산

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도면 부분 중 각 11.6㎡의 철거를 구하나, 피고들이 위 건물을 각 1/2 공유하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택한다.